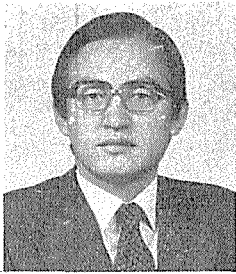


油價調整에 즈음하여



徐 相 喆

〈動力資源部長官〉

국 민 여러분.

정부는 83年 2月 6日 零時를 期하여 國內石油製品價格을 평균 1.68% 引下 調整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國際石油市場 動向은 主要 消費國들의 수요감퇴로 인하여 81年末 이래 供給過剩現象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現物市場의 原油價格은 하락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月 23日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OPEC特別總會가 決裂됨으로써 公式價格 引下問題가 아직도 混迷한 상태이고, 國際金利 및 國內換率 등에 可變性이 있으며, 작년도 換率上昇에 따른 油價引上要因이 일부 남아 있으므로 앞으로 國際石油市場 動向과 國際金利 및 換率 등의 變化趨勢가 보다 뚜렷해짐에 따라 國內油價의 전반적인 再調整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나,

우선 다음과 같은 事由로 이 時點에서 國內油價를 다소나마 引下調整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현재의 與件下에서 活用可能한 油價引下要因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早速히 價格에 반영하여 消費者의 부담을 줄이고,

둘째, 油種間 價格構造의 歪曲과 일부 油種에 偏重된 마진으로 인하여 派生되고 있는 需給蹉跌 및 流通上의 혼란을 방지하며,

셋째, 작년도 石油關聯稅制의 改編內容도 加급적 無理없이 價格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고,

네째, 무엇보다도 産業用 燃料油의 價格을 다소라도 引하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當面問題인 物價安定과 産業의 國際競爭力 強化를 뒷받침하는 것이 시급한 課題이기 때문입니다.

금번 조정된 油種別 價格調整內容을 말씀드리면, LPG의 경우, 최근 벌어지고 있는 精油社와 輸入會社間의 過當販賣競爭은 그 利益이 택시事業者 및 中間 流通業者 등 일부 特定業者에게만 돌아가고 있으며, 一般國民들은 이에 따른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는 實情인 바 이를 장기간 放置한다면 過當競爭에 따른 精油社의 損失이 油價引上 요인으로 轉嫁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輸入 LPG에 追加로 石油事業基金을 부과하는 한편 國內 LPG價格은 금년부터 10%의 特別 消費稅가 새로이 부과되더라도 消費者價格을 기준하여 kg當 平均 79원 引하하였습니다.

B-C油는 國際水準에 비하여 價格이 높아서 이것이 우리 産業의 國際競爭力을 劣化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輸入 LPG에 對한 基金의 追加徵收에 따른 油價引下要因을 최대한 活用하여 l當 3원 17전 引하하였습니다.

한편 揮發油 價格은 지난해의 特別消費稅法

改正時 조정된 稅率(130%→100%)만큼 인하함으로써 消費者價格을 尙 평균 125원 인하하였습니다.

다만 燈油 및 輕油價格은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油種間 價格構造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相當水準으로 上向調整함이 필요하나 이들 油種이 冬節期 煖房用 연료이며 輸送部門의 原價에서 차지하는 비중등을 勘案하여 소폭으로 조정하는데 그쳤습니다.

즉, 輕油는 稅率引上分(7%→9%)만을 가격에 반영하였고, 燈油는 輕油와의 價格均衡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燈油·輕油 供히 尙 5원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油種은 이상과 같은 主要油種의 價格調整에 따라 소폭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점차 油價決定方式을 정부의 直接規制方式에서 市場 經濟原理에 입각한 間接規

制方式으로 전환한다는 基本方針에 따라 우선 國民生活과 직접 관련이 적은 2個油種, 즉 용제와 제트油를 금번 價格告示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의 효과를 보아 정부는 단계적으로 自律化 對象品目を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의 油價引下는 都賣物價를 0.21% 인하시키는 效果를 가져와 國內物價의 안정에 寄與할 것이며, 產業體의 燃料費負擔을 年間 약 450億元이나 輕減시켜 國際競爭力을 다소 향상시킬 것으로 期待됩니다.

그간 정부의 에너지政策 遂行에 대한 國民 여러분의 協調에 衷心으로 感謝를 드리며 앞으로 보다 많은 理解와 聲援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1983年 2月 6日

動力資源部告示(第83-3号)

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收入金の 징수 및 石油事業基金에 의한 損失保全에 관한 告示改正(案)

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收入金の 징수 및 石油事業基金에 의한 損失保全에 관한 告示(動力資源部告示 第82-33号)중 일부를 石油事業法施行令 第9條의 4 및 第9條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83年 1月 28日

動力資源部長官

다 음

第1号(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收入金の 징수금액)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輸入石油製品 중 벵커C油, 프로판, 부탄은 1 배럴당 5 달러(備蓄基金: 1.5달러, 安定

基金: 3.5달러)에 상기의 납부일의 換率을 乘한 金額으로 한다.

부칙 第2号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收入金の 징수대상이 되는 輸入石油 製品 중 韓國電力公社가 서울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輸入하는 低硫黃병커C油(LS WR)에 대한 收入金은 이를 차기 石油製品價格 조정시까지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칙

1. 이 告示는 1983年 1月 1日 이후 선적된 石油分부터 적용한다.